

<p>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p> <p>세 번째로 環境關係法에 의하면 環境影響評價 등을 위해서는 道峰區 區民들과의 협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影響圈內에 있는, 이 地域이 道峰, 蘆原, 議政府 3角 地點에 있습니다.</p> <p>그래서 500m 이내에 蘆原區도 위치해 있고 議政府市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議政府市와 蘆原區廳 쪽도 같이 일정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考慮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p> <p>그 다음에 네 번째로 開發制限區域,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내에서 이 事業을 꼭 進行해야 된다고 하는 妥當性에 대해서 좀 說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住民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p> <p>Respectfully, the residents of Daofeng and Luwon districts, who have been working hard for 2 years and half, believe that the construction of a waste incineration plant is 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They do not oppose it because it is reasonable, but because they believe it is unnecessary. Therefore, they demand that the city government take measures to prevent such a plant from being built.</p> <p>That's all for now. Thank you for your attention.</p> <p>○Chairman Lee Min-koon, Lin Gyeong-geun, you have worked hard. You can leave if you like.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for the residents of Daofeng and Luwon districts.</p> <p>○Specialist Member Lee贊穆, Specialist Member Lee贊穆, I thank you for your support.</p> <p>.....</p> <p>(Report)</p> <p>On the construction of the incineration plant, we request the city governmen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uch a plant from being built.</p>	<p>1.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건명 :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참여요구 청원</li> <li>○ 청원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30-1 이연지 외 1085명 (도봉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 연합회의 집행위원장)</li> <li>○ 청원서 접수 : 1994년 11월 14일 접수 (1994년 11월 15일 위원회 회부)</li> <li>○ 소개의원 : 도시정비위원회 임익근의원(도봉제1선거구)</li> </ul> <p>2. 청원요지</p> <p>제출된 청원사항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p>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쓰레기 소각장주변, 영향지역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어야 함에도, 현행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p> <p>나. 서울특별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즉 구법에 의한 서울시 행위는 신법이 시행된 이후의 부대조항에 규정된 저촉해제 사항이 아니므로 신법이 규정한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p> <p>다. 서울시는 입지결정을 하였다면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을 요약해 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서 동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li> <li>- 동법 시행령 제14조1항에서 입지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li> </ul>
--	--

(第12回—生活環境第5次)

<p>주변영향 지역 범위를 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p> <p>라. 서울시는 사업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입지결정 절차를 밟고 나서 수립되어야 하고 아직 기본계획보고서도 용역계약사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것임.</p> <p>마. 서울시는 '94년 10월 13일에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공고에 의정부시, 노원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결정하거나 초안보고서에 대상지역을 명시했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p> <p>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사업자는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평가 초안 보완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응하여 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서울시장은 사업자로서 지위와 주관시장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도 평가서 초안이 부실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감독 불충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p> <p>사. 서울시장은 사업자 및 주관시장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치 않고 제출된 초안보고서를 성과품으로 접수받아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함에도 이를 근거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며, 서울시장은 청소사업본부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지휘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장의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지휘 감독 불충분이 고의인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임.</p> <p>아. 서울시는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과 근거가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사업본부가 작성한 홍보물의 허위사실을 결재, 공표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것인데,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서울시장의 감독불충분이 고의인지의 여부와 허위공문서 작성자 및 결재권한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탄원한다는 것임.</p> <p>자. 서울시와 영향평가 대행자와의 계약은 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의 결과가 부실해도 좋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 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서 초안을 보완한다는 것은 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 부실한 내용의 초안 보고서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니다.</p> <p>초안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대행계약자가 용납된다면, 용역계약을 처음부터 주민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이상 9개 항목의 청원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p> <p>3. 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법 제4조 및 제8조</li> <li>○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7조</li> <li>○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2조, 제4조, 제11조</li> </ul>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건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청소사업본부에서 현재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li> <li>첫째, 서울특별시가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과의 협의, 건설과 관리를 위한 두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기초의회 의원들과의</li> </ul>
--

<p>협의 등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동 건설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둘째로는 앞에서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행법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법령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p> <p>○ 이 두 가지 대전제가 되는 세부적인 청원의 내용에서, 영향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무시한 사업추진, 관련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에 대하여 본 건 청원내용은 이유있다고 사료되나, 한편 자원회수시설의 설치가 서울시의 장·단기 계획 또는 지역별 설치계획에 의한 시책사업임을 고려할 때, 제기된 청원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경위를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p> <p>.....</p> <p>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本 請願에 대하여 執行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清掃事業本部長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勲 지금 請願 内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p> <p>첫째는 敷地選定 過程에서 節次를 履行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燃却場의 영향권에 있는 地域에 대해서는 條例에 정해야 되는데 條例에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세 번째는 兩 區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兩 區 間에 協議體를 구성해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節次에 관한 事項은 그 당시 道峰쓰레기 燃却場의 敷地를 選定할 당시의 法에는 다 맞도록 節次를 다 밟았습니다. 다만, 이 燃却場 敷地를 選定한 이후에 93年 9月에 廉棄物管理法施行令이 改正되면서 施行規則 第42條에 의해서 새로운 節次가 더規定된 것입니다.</p> <p>이것이 행위 당시의 法에 맞도록 한 節次를 행위를 完了한 후의 法에 맞추어서 節次를 밟아야 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檢討해서 그것이 法上 違反라고 할 것 같으면 위반된 内容을 新法에 맞추어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法上 違反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급적 住民들이 많이 參與할 수 있는 方法으로 道峰쓰레기 燃却場建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두 번째, 影響을 받는 地域으로 的 條例에 정할 必要가 있는데 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現行法上에는 쓰레기 綜合處理施設이 周邊 住民에게 影響을 줄 수 있는 施設로 规定이 안 되어 있습니다.</p> <p>다만, 現在 廉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住民 支援 等에 關한 法律이立法豫告 中에 있고 이것이來年度 중반기에는 公布가 될 豫定으로 있습니다. 이 法이 制定이 되면 그 法에 의해서 우리 서울市가 運營하는 條例도 改正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세 번째, 道峰區에 위치한 쓰레기 燃却場에 道峰區와 城北區에서 發生하는 쓰레기를 燃却하도록 현재 計劃이 되어 있습니다. 兩 個 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兩 個 區의 行政協議會를 구성하는 것을 勸告할 用意가 없느냐, 이것은 앞으로 行政協議會를 구성해서 協議를 통해서 處理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兩 個 區의 組合構成 問題도 行政協議會를 통해서 組合이 構成되어서 運營될 수 있도록 本廳에서 支援, 指導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끝으로 저희가 지금 쓰레기 燃却場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道峰쓰레기 燃却場에 대해서 住民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要望事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受容하기 위한 努력을 최대한 할 것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住民</p>	
--	--